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보건·복지 분야 공무원 및 민간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라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입니다.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함께할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 2. 10.  
한국보건복지인재원장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기반 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1. 모집분야

채용 분야	담당 업무	근무지역	모집인원	비고
<b>계</b>			<b>21명</b>	
<b>체험형 청년인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분야 교육 지원 및 일반 행정 등</li> </ul>	오송	14명	
		서울	2명	
		대구	1명	
		광주	1명	
		대전	1명	
		제주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 콘텐츠(영상 및 이미지) 제작 등 홍보 업무 지원</li> <li>- 포토샵, 프리미어 등 디자인 프로그램 활용</li> </ul>	오송	1명	·고졸 제한

### 2. 근무조건

- (고용형태) 체험형 청년인턴
- (계약기간) 임용일로부터 8개월
  - \* 단,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하며 재계약(계약연장 포함) 보장하지 않음, 전월 만근 시 월 1일 연차 제공
- (근무시간) 주 5일(월~금 9:00~18:00) 근무
- (보수수준) 월 2,096,270원 \* 제수당 별도

### 3. 응시자격 요건 및 우대사항

#### ○ 지원자격

채용 분야		지원자격
공통		우리원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및 제57조(정년퇴직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직원채용운용세칙 제2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체험형 청년인턴	일반	청년(만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
	고졸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청년 미취업자 (25년 상반기 졸업예정자 지원 가능 / 대학 졸업예정자는 지원 불가)

#### ○ 응시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단,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복무자의 상한연령은 다음과 같이 조정

군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상한연령	만 35세	만 36세	만 37세

#### ○ 성 별 : 제한없음

#### ○ 학 력

- 고졸제한전형: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
- 그 외: 제한 없음

#### ○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이전지역인재,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족 중 가장 유리한 1가지 항목 적용
- ※ 채용우대사항 관련 붙임자료 참고

**\*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9.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4. 채용 전형 절차 및 방법



전형 절차	예정일	내용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 10.(월) ~ 2. 24.(월) 18시	· 우리원 채용홈페이지(kohi.recruiter.co.kr)에서 개별접수 ※ 기한 내 최종 제출된 서류만 인정,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불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 28.(금)	· <b>심사기준:</b> ① 기관의 목표 및 비전에 대한 이해 ② 기관 핵심가치의 이해 ③ 교육 및 자격사항 ④ 경력 및 경험 사항 ·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가점을 반영하여 서류 전형 최종 점수를 결정 ·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에 따라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5배수 이내 최하위순위 합격자가 동점일 시 동점자 전원 합격 · 채용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예정
인성검사	3. 3.(월) ~ 3. 4.(화)	· 온라인을 통한 인성검사 · <b>심사기준 :</b> 성장가능성 및 조직적합성 ·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 참고용으로 사용하며, 별도의 결과 통보 없음.
면접시험 (심층면접)	3. 6. (목)	· <b>심사기준:</b> ①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④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우대 가점을 반영하여 최종 점수를 결정 ·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에 따라 합격자 선발 · 세부일정 개인별 안내 예정 · <b>장소 :</b>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오송 본원 예정 * 제주지역의 경우, 우리원 제주 출장소에서 비대면 면접 진행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3. 10. (월)	·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예정 · 최종합격 후에도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취소 가능
증빙서류 제출	3. 10.(월)~ 3. 14.(금)	· 채용신체검사(6개월 이내 건강검진통보서 또는 진단서 제출 가능) 및 증빙서류 제출 ※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취소
신규임용	3. 17.(월)	· 최종 합격 후 개별 통지

※ 전형 일정과 방법, 합격자 발표일 등은 기관 내부사정 및 지원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합격자 발표 안내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채용홈페이지 공지사항(kohi.recruiter.co.kr)을 통해 개별 확인

- 전형별 심사대상자 **전원**에게 합격자 발표 **확인 문자** 통보

-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휴대폰 번호**로 통보되며, 번호오류·누락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 있음

## 5. 제출서류

제출시기	세부내용
입사 지원 시	<입사지원 시 제출서류는 채용사이트-입사지원(kohi.recruiter.co.kr)에서 작성하여 제출> 1.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역량기술서
최종 합격 자 제출 서류	2.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원본)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번호 뒷자리 모두 표기) 1부(원본) 4. 기본증명서(상세/주민번호 뒷자리 모두 표기) 1부(원본) 5. 대학(전문대학) 이상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원본) ※ 고등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는 제외하며 대학 중퇴·편입학, 전문대학 취득의 경우, 해당 증명서 모두 제출(단, 최종학력이 고등학교인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성적증명서 제출)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원본) 7. 신원진술서 1부 8. 공공기관 직원 비위면직자 확인사항 1부 9. 친인척 현황조사 수집동의서 1부 ※ 7~9번 서류는 양식 추후 배포 예정 10. 채용신체검사서 1부(원본) :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 건강검진통보서 또는 진단서 제출 가능
	11. 경력(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사항에 대해 제출 ※ 발급 6개월 이내의 증빙서류, 경력사항에 기재한 경력일체, 기간별 세부 담당업무 반드시 기재 12. 서류전형 우대사항 증빙서류 1부(원본) 13. 자격(면허) 증빙서류 1부(사본)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자격(면허)증에 대해 제출

## 6. 기타사항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블라인드채용에 의거하여 채용을 진행하며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및 역량기술서에 지원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서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귀책사유는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허위사실 기재로 간주하여 결격처리(합격취소·임용취소) 할 수 있습니다.
3.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분야의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최종 합격자 통보 후에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채용분야별로 선발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 중에서 합격자 바로 하위 최고 득점자 순으로 채용공고 인원의 30%(소수점 이하 절상) 범위에서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습니다.  
\* 채용인원이 4명 이하일 경우 최대 2명까지 가능, 예비합격자의 합격 유효기간은 대상자 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6.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등)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본 채용공고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채용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8.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 청탁은 일체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에는 본원의 「직원 채용 운용세칙」에 따라 불합격 처리됩니다.
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이내 추가 제출서류(온라인을 통해 제출한 파일 제외)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반환요청을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응시자에게 채용서류를 반환합니다.

## [붙임]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채용 우대사항 안내

※ 우대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점수가 높은 항목을 적용(최상위 1개)

요건	가점기준	전형단계 적용			증빙서류
		서류	필기	면접	
1.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5% 또는 10% 가점	5% 또는 10% 가점	5% 또는 10% 가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관할 보훈청)
2.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5% 가점	5% 가점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3.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5% 가점	5% 가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4. 이전지역 지역인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전, 세종, 충남, 충북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3% 가점			학력증명서
5. 경력단절 여성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의한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6개월 이상 중단한 자(공고일 현재 무직인자에 한함)	3% 가점	3% 가점		가족관계증명서, 고용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6. 북한이탈 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3% 가점	3% 가점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7.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3% 가점	3% 가점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증빙서류는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취득하여 제출한자에 한하여 인정

※ 인성검사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음.

※ **가점은 최상위 1개만** 인정하고, **전형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해서만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의 적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를 따름.

## 참고1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

### 가. 이전 지역인재의 개념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이하 "이전지역 학교"라 함)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대학졸업예정자는 4년(=8학기, 전문대학의 경우 2년=4학기)이상 등록하고, 최종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 이전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시점에 제출 할 수 있어야 함.

### 나. 이전지역 학교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로 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음

- ①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의 본교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역대학은 이전지역 학교에 포함
- ② 「고등교육법」 제24조에 따른 분교 및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지방캠퍼스(이원화 캠퍼스)
  - \* 본교와 다른 이전지역에 분교 및 이원화 캠퍼스가 위치한 경우,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로 포함되며, 이 경우 이전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 졸업예정인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 이전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이원화 캠퍼스 중 본교가 이전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이원화 캠퍼스도 본교가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로 포함
- ③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④ 특별법으로 설치된 다음 학교는 졸업 후 임용이 보장되고 일정기간 복무의무를 지며 국고에서 학비를 부담하므로 소재지에 관계없이 제외
  - ㉠ 「경찰대학 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경기)
  - ㉡ 「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해·공군사관학교(서울·경남·충북)
  -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대전)
  -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군 제3사관학교(경북)
- ⑤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 외국학교 및 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는 제외

### 다. 이전 지역인재

이전지역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으로 다음과 같음

- ① 다음의 이전지역대학 졸업(예정)자
  - ㉠ 이전지역에 위치한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와 과학기술 대학을 졸업한 경우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이전지역에 위치한 학교에서 전 기간을 수강하고 졸업한 경우
- ② 이전 지역인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또는 열거된 학력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 학력을 제외한 최종 학력이 이전지역 학교일 경우
  - ㉠ 「고등교육법」,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
  - ㉡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사이버대학
  - ㉢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
  -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독학학위 취득자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학위 취득자
- ③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㉔ 수도권 소재 학교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소재 학교가 이전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전 졸업자는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
- ㉕ 지방소재 학교가 수도권으로 이전하였거나 이전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후 입학자는 수도권 또는 이전지역 밖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것으로 보아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

〈 예 시 〉

- 〈본교의 위치와 분교·지방캠퍼스의 위치가 다른 경우〉
- 본교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분교·지방캠퍼스가 지방에 위치한 경우 :  
분교·지방캠퍼스는 지역인재에 해당
  - 본교가 지방에 위치하고, 분교·지방캠퍼스가 다른 지방에 위치한 경우 :  
분교·지방캠퍼스는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곳의 지역인재에 해당
  - \* 부산대 본교는 부산에 위치, 지방캠퍼스인 양산캠퍼스의 경우 경남에 위치하므로, 본교 학생은 부산, 양산캠퍼스 학생은 경남의 지역인재에 해당
- 〈이전지역 대학교와 타 지역 대학교를 모두 졸업한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 소재 대학 졸업 : 해당
  -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 졸업(예정) : 해당
- 〈대학 졸업 후 다른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해당
  -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비해당
  - ※ 다만,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수강지역대학을 변경한 경우〉
- 타 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이전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 비해당
  - 이전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타 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 비해당
- 〈대학 중퇴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비해당
  - 타 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비해당
  - ※ 다만,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
-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중퇴한 경우〉
- 이전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사관학교 중퇴자 : 해당
  - 타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사관학교 중퇴자 : 비해당
- 〈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재학 또는 졸업한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타지역 소재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 해당
  - 타 지역 소재 대학 졸업 후 이전지역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 비해당

**참고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이전공공기관 등의 지역인재 채용)

- ⑥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이전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 3.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또는 충청남도 인 경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